

『구미시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」에 대한 상위법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, 「지적법」이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개명되어 변경된 개별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적법」을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 삽입(안 제1조)
- 점용료 요율 관련 「국유재산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관계규정 명시(안 제8조)
- 점용료 월액 납부방법 규정(안 제8조제3항)
-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개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 : 규제심사 이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□ 본 「구미시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은,

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, 「지적법」이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개명되어 변경된 개별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지적법」을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
- 점용료 요율 관련 「국유재산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관계규정 명시(안 제8조)
- 점용료 납부 방법 및 부과 산정에 대한 단서를 신설, 점용료 월액 납부방법 규정(안 제8조제3항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점용료 납부 방법 및 부과 산정에 대한 단서 신설 등 변경된 개별 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